

국세청,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늦추고 간이과세 적용대상은 늘린다

- 1.6.(화) 전국상인연합회와 수원 못골시장에서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-

【관련 국정과제】 61.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, 활기 도는 골목상권

- 국세청(청장 임광현)은 1월 6일(화)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*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.
 - *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6조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, 상인 권익보호를 위해 2006년 설립된 단체
-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 국세청에서는 임광현 청장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였고, 연합회 측에서는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및 지역 연합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.
- 간담회 인사말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“소비 위축,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직접 듣고 국세행정에 반영하여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하였다”라며
 - “앞으로도 국세청은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라고 말했습니다.
-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환영사에서 “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세청장님의 세심한 배려에 대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린다”고 말하며,
 -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“세금 문제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”고 당부하였습니다.
- 국세청은 간담회에서 금년에 추진할 부가가치세 직권 납부기한 연장,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 소상공인을 위한 총 9가지 민생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. **붙임 1~9 참조**

- 주요 내용으로, 먼저 **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'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**합니다.
 - 직권연장 대상자는 ① '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고 ②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(제조, 건설, 도매, 소매, 음식, 숙박, 운수, 서비스)을 영위하며, ③ '25.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% 이상 감소한 사업자입니다. (약 124만 명 예상)
 - *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은 추후 별도 추진 예정
- 또한, 「간이과세 배제기준(고시)」의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영세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합니다.
 - 그동안 도심지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시장 내에 소재한 사업자는 실제 매출규모가 영세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.
 - 이에 사업장 규모 및 업황 변동추이 등을 반영하여 간이과세배제 지역 기준을 일제정비함으로서, 앞으로 전통시장 상인들도 폭넓게 간이과세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그 밖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장려금 조기지급, 납세담보 면제 확대, 소상공인 세무검증 유예,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등 다양한 민생지원 방안을 추진합니다.
- 민생 종합대책 발표 후에는 전통시장 상인의 애로·건의사항을 청취하고,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
-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① 신고기간 중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세무상담 확대, ② 전통시장 상인 맞춤형 세무 가이드 배포, ③ 예정고지 기준금액(세액 50만원) 상향 등 다양한 내용을 건의하였습니다.
-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·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 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가이드를 배포하는 한편, 세법개정이 필요한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등은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 하겠다고 밝혀 간담회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

- 한편,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임광현 청장은 수원 못골시장 상점가를 방문하여 상인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였습니다.
- 모든 행사를 마무리한 후 임광현 청장은 “전통시장 상인들이 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하여 현장에서 직접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”고 말하며,
- “시장 상인들의 소중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하고 국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”고 밝혔습니다.
-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금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여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	책임자	과 장	이인섭 (044-204-3201)
		담당자	사무관	최홍신 (044-204-3212)
		담당자	사무관	신범하 (044-204-3217)
<협조>	개인납세국 소득세과	책임자	과 장	손채령 (044-204-3241)
		담당자	사무관	김주강 (044-204-3252)
		담당자	사무관	윤나영 (044-204-3262)
<협조>	징세법무국 징세과	책임자	과 장	안민규 (044-204-3001)
		담당자	사무관	백지선 (044-204-3002)
		담당자	사무관	신지명 (044-204-3012)
<협조>	조사국 조사기획과	책임자	과 장	박상준 (044-204-3501)
		담당자	사무관	정성한 (044-204-3517)
<협조>	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장	책임자	과 장	정상수 (044-204-3801)
		담당자	사무관	선희숙 (044-204-3817)
<협조>	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	신예진 (044-204-2701)
		담당자	사무관	이종영 (044-204-2717)

□ 전국상인연합회 현황

- (설립목적)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발전과 상인회 활동 지원
- (설립근거)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6조
- (설립일) 2006. 5. 17.
- (회장) 이 충 환(못골종합시장 상인회장)
- (주요사업)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, 상인 조직육성과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, 상인들의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 확보 등

□ 못골종합시장 현황

- (소재지)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254
- (규모) 부지면적 8,265㎡, 매장면적 3,885㎡
- (점포수) 약 90여개
- (유래)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만들었다는 연못이 있었던 낮은 산아래 천변마을 ‘못골’, 1970년대부터 주민밀착형 골목시장으로 시민들의 이동경로상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으며 ‘못골’이라는 이름을 따서 못골시장으로 불리게 되었고 2005년 인정 시장으로 등록됨
- (특징) 주로 반찬, 떡, 생선, 야채, 정육, 건어물 등 1,2차 식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시장으로서, 수원 구도심의 9개 전통 시장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고 늦게 형성된 시장임

붙임자료 목록

1. 납부기한 직권 연장 6
2.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조정 7
- 3-1.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8
- 3-2. 소상공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려금 조기지급 9
4. 납세담보 면제 확대 10
5. 세무검증 유예 11
6. 납세소통지원단 신설 12
7.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13
8.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14
9. 소액체납자 재기 지원 15

□ 현황

○ (납부기한 연장) 중소·영세사업자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납부기한 연장*

* 일반적인 경우 최대 9개월, 특별재난 지역 2년 이내

- 경제상황·특별 재난지역 등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납세자의 신청없이 선제적으로 직권연장 실시

□ 추진 방안

○ 매출액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'2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추진

- ①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로서, ②제조, 건설, 도매, 소매, 음식, 숙박, 운수,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업종을 영위하며, ③'25.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% 이상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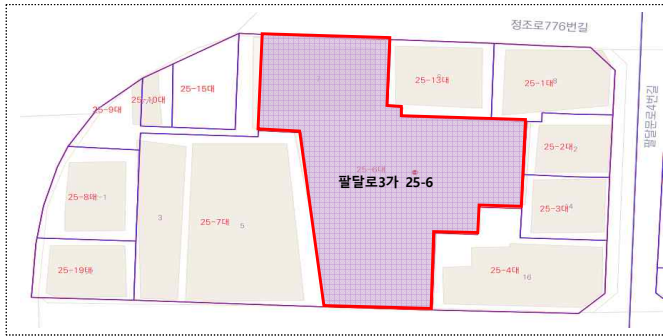
□ 기대 효과

○ 경기회복 지연, 관세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내·외여건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유동성 완화

담당 부서	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	책임자	과 장 이인섭 (044-204-3201)
		담당자	사무관 최홍신 (044-204-3212)
	개인납세국 소득세과	책임자	과 장 손채령 (044-204-3241)
		담당자	사무관 김주강 (044-204-3252)

□ 현황

- 세무서별로 상권 변화 및 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검토·정비하고 있으나,
 - 도심지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의 경우 실제 매출 규모가 적은 영세 사업자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함



-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: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25-6
- 전통시장 : 팔달문시장
- 팔달문시장 내 영세 사업자이나, 수원 팔달구 팔달로3가 25-6 간이과세 배제 지역 내 소재하여 일반과세 적용

□ 추진 및 개선방안

- 전통시장 내 영세사업자에 대해 사업장 규모 및 업황 변동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배제기준 정비
 - 업종 현황, 사업장 접근성, 유동인구 등 고려하여 지역 기준 재검토

□ 향후 일정

- (지역기준 검토) 세무서별 전통시장 배제 여부 검토('26.3~4월)
- (행정예고) 국세청 누리집에 고시 개정(안) 의견 수렴('26.5월)
- (개정고시 적용) 개정 지역 기준에 따른 간이과세 적용 확대('26.7월)

□ 기대 효과

- 전통시장 내 소재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하여 세부담 완화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

담당 부서	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	책임자	과 장 이인섭 (044-204-3201)
		담당자	사무관 신범하 (044-204-3217)

□ 현황

- (환급금 조기지급)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시에는 법정지급기한 보다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여 자금경색으로 인한 어려움을 적극 지원
 - 법정지급 기한*보다 조기환급 5일, 일반환급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
 - * 신고 기간 경과 후 조기환급 15일, 일반환급 30일 내 지급

Ⅰ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Ⅰ

중소영세	① 직전연도 매출액 1,500억원 이하 &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
혁신지원	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·표창 수상자 (국세청표창규정 제3조) ④ 혁신성장기업,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(반도체, 바이오, 환경 등)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
피해기업	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(경남 산청·포천시 이동면 등) ⑦ 위메프·티몬·인터파크·AK몰·알렛츠 피해사업자 ⑧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

□ 추진 방안

- '25.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, 소상공인 등 환급금 조기지급
 - 1.26.(월)까지 환급 신청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조기환급은 2.4.(수)까지, 일반환급은 2.13.(금)까지 앞당겨 지급

Ⅰ 환급금 조기지급 일정 Ⅰ

구 분	법정 지급기한	지급 예정일	조기지급 일수
조기환급	'26. 2.10.	'26. 2.4.	6일
일반환급	'26. 2.25.	'26. 2.13.	12일

□ 기대 효과

- 경기회복 지연, 관세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내·외여건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유동성 지원

담당 부서	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	책임자	과 장 이인섭 (044-204-3201)
		담당자	사무관 최홍신 (044-204-3212)

□ **현황**

- 소비위축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자영업자 등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한 지원* 필요

* '24년 귀속 정기분 근로·자녀장려금 279만 가구, 3조 원 지급

□ **추진 및 개선방안**

- 장려금은 법령상 신청기간 경과 후 4개월 이내에 지급*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조기 지급 추진

* (정기분) 신청기간(종합소득세 신고기간) ⇒ 4개월(심사 3개월 +환급 30일) 이내

- 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소득·재산자료를 빠짐없이 수집·구축하고, 간편심사 확대를 통한 심사효율화로 심사기간 단축하여 조기지급

□ **향후 일정**

- '25년 귀속 정기분 근로·자녀장려금* 신청자에 대해 수급요건을 검증하여 법정기한(10.1.)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할 예정

* 신청기간 : '26. 5. 1.~ 6.1. ⇒ '26. 8월 말 지급 예정



□ **기대 효과**

- 장려금 조기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즉각적인 생계부담을 완화하고, 자금흐름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담당 부서	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	책임자	과 장	정상수 (044-204-3801)
		담당자	사무관	선희숙 (044-204-3817)

□ 현황

- 경기회복 지연, 관세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내·외여건 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필요

□ 추진 및 개선방안

- (지원내용) 지원대상 소상공인·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이 납부기한 등의 연장 및 압류·매각유예 신청시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
- (지원기간) '25년 7월 25일 ~ '26년 12월 31일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

<납세담보 면제 특례 지원대상자>

일반과세자 (40만명)	건설·제조업 및 음식·숙박·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사업자* * '24.2기 귀속(7.1.~12.31.)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% 이상 감소한 사업자
간이과세자 (14.5만명)	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중 음식·숙박·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
수출기업 (1.8만명)	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로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- (개인) '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% 이상 + 관세청·코트라(KOTRA) 선정 수출기업 - (법인) '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%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+ 관세청·코트라(KOTRA) 선정 수출기업

□ 향후 일정

- 추후 납세담보특례 필요성 따라 지원기간 연장 여부 결정
- 변화하는 경제여건 등을 반영하여 세정지원 규모를 확대 예정

□ 기대 효과

-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납세담보 면제 특례를 실시하여 자금유동성 지원

담당 부서	징세법무국 징세과	책임자	과 장 안민규 (044-204-3001)
		담당자	사무관 백지선 (044-204-3002)

□ 현황

- 대기업과 달리 **소상공인**은 재무 관리체계, 회계·세무 전담직원이 부재하여 **세무조사 및 신고내용확인 대응** 그 자체가 **영업활동에 큰 부담**으로 작용

□ 추진 방안

세무조사 유예

- 조사부담 경감을 위해 **매출액 10억 원 미만** 소상공인(개인+법인)에 대해 **'26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 전격 유예***

* 단,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, 세법상 수시부과 사유 발생 시 적용 제외

신고내용 확인

- **소규모 자영업자¹⁾, 수출 중소기업** 등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검증대상 **선정단계부터 원칙적으로 제외²⁾**

1)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자(도·소매 6억, 제조·음식·숙박 3억, 부동산임대 7,500만원 등)

2) 매출누락, 부당환급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가능

□ 기대 효과

- 소상공인이 **세무검증에 대한 걱정 없이**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, **조속한 민생회복 지원**

담당 부서	조사과	책임자	과 장	박상준 (044-204-3501)
		담당자	사무관	정성한 (044-204-3517)
	부가가치세과	책임자	과 장	이인섭 (044-204-3201)
		담당자	사무관	최홍신 (044-204-3212)
	소득세과	책임자	과 장	손채령 (044-204-3241)
		담당자	사무관	김주강 (044-204-3252)

□ 추진 개요

- 자영업자·소상공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, 불편사항을 상시 수집·해결할 수 있도록 납세자 소통체계 개편 추진

□ 추진 내용

- (상시수집) 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불편사항을 상시 수집하는 세무서 「납세소통전담반」을 신설하고 소통체계 개편
 - 세무서에 「납세소통전담반」을 설치하고 공감소통을 현장 중심의 소통창구로 개편하여 납세자 불편사항을 상시 수집하여 관리
- (신속해결) 수집한 납세불편사항에 대해 본청·지방청의 「납세소통지원단」 정례회의를 통해 해결방안 마련
 - 본·지방청에 「납세소통지원단」을 설치하고, 본·지방청은 세무서에서 수집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 개최 및 진행상황 관리
- (성과홍보) 「납세소통지원단」이 해결한 납세불편사항 중 대국민 체감효과가 큰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실시
 -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결한 사례 중 실효성이 크고 파급력이 큰 우수사례를 발굴·포상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

□ 기대 효과

- 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납세불편사항을 상시 수집한 후 신속하게 해결하여 민생경제 회복 지원 및 활력 제고

담당 부서	납세자보호국 납세자보호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 신예진 (044-204-2701)
		담당자	사무관 이종영 (044-204-2717)

□ 현황

- (과세현황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'소진공')은 '20년부터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구직지원금*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22%를 원천징수·납부

* 「희망리턴패키지」 프로그램으로 폐업 소상공인이 구직활동 및 취업 성공 시 20만 원 ~ 60만 원(인당 300만 원 한도)을 지급

□ 추진 내용

- 소득세법은 '열거주의' 원칙이나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이를 비과세로 해석(최초)

□ 향후 일정

- '20년~'24년 원천징수·납부된 기타소득세를 소상공인에게 환급하는 방안을 소진공과 논의하고, 최대한 빠르게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

□ 기대 효과

- '20년 이후 폐업 소상공인 약 7만명에게 지급한 구직지원금 487억원에 대한 소득세 107억 원을 환급함으로써 실질적 지원금 상승
- 향후 구직지원금 지급 시 비과세될 금액까지 포함하면 유권해석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효과는 더욱 상승할 예정

담당 부서	개인납세국 소득세과	책임자	과 장	손채령 (044-204-3241)
		담당자	사무관	윤나영 (044-204-3252)

□ **현황**

- 국세 신용카드 등 납부는 2008년 도입되었으며, 당시 납부세액의 1.5%였던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은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하*해왔음

* ⁽⁰⁸⁾ 1.5% → ⁽¹⁰⁾ 1.2% → ⁽¹⁵⁾ 1.0%(체크 0.7%) → ⁽¹⁶⁾ 0.8%(체크 0.7%) → ⁽¹⁸⁾ 0.8%(체크 0.5%)

□ **추진 내용**

- 소상공인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반영하여, 2018년 이후 약 7년 만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를 추진
- 납세자·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대행 수수료율을 각 0.1%p 일괄 인하하였으며,
 - 영세사업자*의 사업·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·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납부 시 0.4%p, 체크카드 납부 시 0.35%p를 인하, 신용카드 기준 50%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

* (부가가치세) 간이과세자/ (종합소득세) 직전년도 추계(단순기준) 및 간편장부 신고자

<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>

구 분	신용카드		체크카드	
	현행	인하	현행	인하
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·종합소득세	0.8%	0.4%	0.5%	0.15%
일반*		0.7%		0.4%

* 단, 연간 총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유지

□ **기대 효과**

- 2025.12.2.부터 변경된 수수료율 체계가 적용되고 있으며,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 예상

담당 부서	징세법무국 징세과	책임자	과 장 안민규 (044-204-3001)
		담당자	사무관 백지선 (044-204-3002)

□ **현황**

- 경기회복 지연,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부진 등으로 개인사업자 폐업이 증가*함에 따라 소액 채납자에 대한 재기지원 방안 마련 필요
- * 개인사업자 폐업현황 : ('22) 80만명 → ('23) 91만명 → ('24) 93만명

□ **추진 내용**

- (생계 곤란형 채납자 지원) 실태확인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채납자*는 체납액 납부의무를 조기에 소멸
- * '25.1.1 이전 발생 징수 곤란한 종소세·부가세 체납액 5천만원 이하인 무재산·폐업자
- (폐업 영세사업자 지원)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대상 확대¹⁾ 및 신청요건 완화²⁾하여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
- 1) (종전) 사업등록자·취업자 → (확대) 특수형태근로종사자(예술인, 배달라이더 등)까지 확대
- 2) (종전) 종소세·부가세 합계 체납액 5천만원 이하 → (완화) 8천만원 이하로 상향
- (압류재산 적극 해제)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행정적인 비효율이 발생하는 실익 없는 압류재산*을 적극 해제
- * 중고·저가차량, 휴면계좌 또는 소액 예금계좌, 추심금 없는 매출채권 등

□ **향후 일정**

-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제도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*하고, 요건완화로 징수특례 신청이 가능해진 채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 강화
- * 업무매뉴얼 마련, 전산화면개발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, 제도 시행되면 국세 채납관리단의 실태확인과 연계하여 생계 곤란형 채납자 적극 지원

□ **기대 효과**

-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소액채납자의 경제활동 재기 의욕을 고양하고, 이들이 정상적 사회생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

담당 부서	징세법무국 징세과	책임자	과 장	안민규 (044-204-3001)
		담당자	사무관	신지명 (044-204-3012)